

#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### 환경수자원위원회 광향기 의원

□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광향기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 외 26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□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여 ‘연차별 가로수계획’을 시행하도록 하고, 이를 위해 ‘가로수기본계획’ 수립 시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에 관한 지침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안 제4조제1항제5호에 연차별 가로수 관리계획 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안 제4조제2항에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명시하였으며,

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시행 시 진단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